

石油代理店계약의 法律關係

韓 興 愚

(油公·法制部長)

최근 石油製品販賣代理店契約(이하 代理店契約이라 한다)의 修正論議가 提起되고 있다. 独占規制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이라 한다)의 施行을 契機로 韓國石油流通協會가 代理店契約中 일부 條項의 不正性을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代理店契約中에는 현실에 不適合한 一部條項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事實이며, 따라서 이들 一部 約定의 实效性 그 自体가 의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는 石油業界의 興件變動의 결과로서 派生된 것이지 결코 公正去來法の 施行때 문만은 아닌 것으로 認識된다. 現行 代理店契約은 60년대초 精油會社의 定形的 供給約款에 터잡아 마련된 것인데, 그동안 약 20年の 期間中 약 20倍에 이르는 生産能力의 增加와 함께 國內外 石油需給事情 또한 隨時로 變貌되어 왔기 때문이다.

此際에 石油代理店契約의 沿革 내지 性格과 代理店契約의 法律關係를 요약·정리함으로써 本란을 마련한 編輯者의 意圖에 多少라도 副應해 보고자 한다.

都売業인 石油販売業

石油代理店이란: 石油精製業者와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石油製品의 供給을 받아 이를 注油所·販賣所 및 實消費者에게 販賣하는 都売業인 石油販売業을 말한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참조).

(1) 石油精製業者와의 石油製品供給契約이 先行되어야 한다. 石油代理店은 特定한 1個精油會社와 代理店契約을 체결하고 當該 精油會社의 石油製品 單을 취급·판매한다. 代理店契約에 의하여 所要製品 全量의 공급을 特定精油 1社로부터 보장받고 있으며, 法律上으로도 石油代理店許可時에 特定石油精製業者와의 石油製品供給契約을 필수적인 証憑 書類로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석유사업법시행규

칙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

(2) 石油精製業者로부터 供給받은 石油製品을 注油所·販賣所 및 實消費者에게 販賣한다. 精油會社는 代理店契約을 맺은 石油代理店이외의 石油販売業者에게 轉売를 허용하는 條件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지만, 精油會社가 제품을 공급하는 石油代理店은 1個社에 限하지 아니하고 多數임이 通例이다. 石油代理店은 實消費者뿐만 아니라 注油所나 販賣所와 같은 石油小売業者에게도 都売의 방식으로 產品을 판매한다. 石油代理店과 注油所乃至 販賣所는 다같이 石油販売業이면서도 許可基準·營業設備·製品去來先等의 面에서 相異하다(석유사업법 제1조 제4호,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참조)

(3) 石油販売業을 營爲하는 獨立의 商人이다. 石油代理店은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販売業을 營爲하는 점에서 獨立의 商人이면서도 特定人을 위하여 또는 不特定多數人間에 단순한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하는 「代理商」이나 「仲介業」과 구별된다.

市道販賣人에서 由來: 石油代理店의 沿革은 1950年代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市·道販賣人의 油類分配機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5년 5월31일에 韓美兩國政府間에 체결된 石油運營協定(Petroleum Operating Agreement)이후 64년 4월 1일 油公의 蔚山精油工場 移動時까지 市·道販賣人은 石油運營協定에 의하여 도입된 製品을 大韓石油貯藏株式會社(Korea Oil Storage Company = KOSCO)로부터 供給받아 販賣하였다. 油公設立을 위한 大韓石油公社法(1962. 7. 24 법률 제1111호)의 공포후 종전의 石油運營協定에 가름하여 韓美石油協定(Petroleum Agreement)이 64년 5월12일에 作成·締結됨에 따라 KOSCO의 施設과 人員 모두가 油公에 인계되면서부터 市·道販賣人은 油公으로부터 產品의 供給을 받게 되었다.

石油類販賣規則(1965. 10. 20)商工部令 第147号)에 의하면, 市·道販賣人은

첫째) 一定規模이상의 資本金과 貯油施設을 갖춘 者中에서 油公이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고,

둘째) 서울特別市와 釜山市 및 各道別로 販賣區域과 取扱油種이 제한되며,

셋째) 地方長官이 정하는 配定量에 따라 副販賣人·注油所·實需要者에게 購入券과 相換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石油事業法上的 石油代理店許可에 精油社와의 供給契約과 一定規模이상의 貯油施設을 要하고 市·道別로 販賣區域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市·道販賣人에게 적용되던 石油類販賣規則에 緣由함을 알 수 있다.

어떻든 石油配定方式에 依한 市·道販賣人의 石油都売業은 極東石油와 湖油의 精油工場이 66년 3월 10일과 69년 4월 22일부터 各各 稼動될 때까지 계속 되다가 70년 1월 1일 大韓石油公社法이 폐지되고 같은날 石油事業法이 공포됨과 동시에 石油代理店을 통한 競争市場의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京仁에너지와 雙龍精油의 설립을 前後하여 石油製品販賣 競争이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關係法令을 通해본 石油業界의 變遷過程을 참고로 표시하여 보면, 別表와 같다.

市場 区分	配 給 制	獨 占 販 賣	競 争 販 賣
關係法令	韓美石油 運營協定 (1955. 5. 31)	大韓石油 公社法 (1962. 7. 24) 韓美石油協定 (1964. 5. 12)	石油事業法 (1970. 1. 1)
石油事業	KOSCO ↓ 市道販賣人 ↓ 副販賣人·注油所	大韓石油公社 ↓ 石油代理店 ↓ 注油所·販賣所	精油 5 社 ↓ 石油代理店 ↓ 注油所·販賣所

排他的專屬販賣特約

特約店契約：石油代理店の 專屬販賣約定은 일종의 特約店契約에 屬하거나 特約代理店(Exclusive Agent)이란 商品生産者와 特約店契約을 체결하고, 特定한 地域이나 市場에서 当該 生産者의 商品販賣權을 保有하는 代理店을 말한다.

(1)特約店契約(Exclusive Agency Agreement)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生産者自身の 商品販賣를 排除하지 않지만 特約代理店아닌 第3者에 의한 商品販賣는 금지된다.

特約代理店の 排他的販賣權과 專屬的購買義務는 互惠的 雙務約定으로 해석되어진다.

(2)特定한 地域이나 市場에서 特約代理店이 보유하는 販賣權은 반드시 獨占的인 것은 아니며, 이점에서 生産者의 商品全體를 相對方에 引渡기로 하는 「全量去來約定(Entire Output Contract)」과 다르다.

(3)公正去來法은 特約店契約自体를 규제하지 않고, 그중에서 不當排他條件附去來 만을 금지하고 있다. 經濟企劃院이 不公正去來行爲類型으로서 指定 公示한 不當排他條件附去來는 不當하게 競争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자기의 競争者로부터 商品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는 條件附 去來行爲를 말한다. (公正去來法 第15條 第2号, 경제기획원告示 第40号 第10項 참조)

各國의 立法例를 보아도 原則的으로 特約店契約의 適法性이 認定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 供給者가 特定 1人에 대하여만 商品을 판매하거나 需要者가 特定 1人으로부터만 商品을 購買기로 하는 「排他的獨占去來約定(Exclusive Dealing Arrangements)」조차도 普通法(Common Law)下에서는 허용 되고 다만 克雷頓法和 연방거래 위원회법 (Clayton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s) 및 셔먼法(Sherman Antitrust Act)下에서만 일반적으로 禁止되고 있을 뿐이다.

排他條件附代理店契約：代理店契約은 精油會社가 石油代理店과 約定한 契約物量을 油種別 生産·販賣·需給計劃에 反映하여 全量 供給하고 石油代理店또한 그 所要製品全量을 1個 精油會社로부터 購買하는 排他的專屬販賣契約에 해당한다.

石油代理店은 精油會社自身の 大量實需要處에 대한 製品販賣를 排除하지 아니한 채 販賣區域別로 複數인 점에서 特定市場에서의 獨占的 販賣權을 保有하는 日本의 元売制度나 美國 連방거래 위원會상의 全量去來約定과 다르다. 精油業界의 立場에서 石油代理店の 系列化乃至 專屬化는 다음과 같이 正當한 理由가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主張된 바 있다. 첫째) 精油會社側 供給責任과 石油代理店側 購買義務

務는 相互 對價의인 關係에 있다.

둘째) 石油類의 安定적인 공급과 油種別 需給計劃의 樹立執行에 重要하다.

셋째) 原油의 性狀과 製造工程및 添加濟의 種類에 따라 精油會社別로 品質面에 顯격한 差異가 있는 數種의 제품을 混藏·取扱함에 따른 危害를 防止할 必要性이 絶실하다.

넷째) 競爭社를 排除할 目的으로 既存의 併売店인 石油代理店을 特約店化하거나 他社系列石油代理店을 自社 去來先으로 誘引· 강제하는 典型的 不當排他條件附約定과 區別된다.

代理店契約修正措置

經濟企劃院은 第13次 公正去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81년 8월 31일 精油5社에 대하여 代理店契約中 다음의 一部 條項을 削除乃至 修正할 것을 命하였다.

◎ 排他條件附去來規定= 1년을 넘는 石油代理店의 所要製品 全量購買義務約定

◎ 不當拘束條件附去來規定= 石油代理店의 販賣區域과 販賣方法等 各種營業活動을 制限·拘束하는 約定

◎ 優越의地位의 濫用規定= 精油會社의 一방적 代理店契約 解釋決定과 契約解止權 保有約定

◎ 再販賣價格維持規定= 精油會社가 石油代理店等의 製品販賣價格을 定할 수 있다는 約定.

이같은 公正去來當局의 是正命令은 石油業界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精油社에 의한 石油代理店의 系列化를 意味하는 專屬販賣特約을 一일 認定하고 1年을 超過하는 排他條件附去來約定의 削除를 命한 것은 既存의 石油流通秩序를 尊重하면서 石油去來慣行에 적합한 公正去來를 誘導한다는 面에서 石油業界의 현실을 直視한 措置라고 評價될 수 있을 듯하다. 이밖에 不當拘束條件附去來나 優越의地位濫用 行爲에 屬하는 諸般約定은 私法上으로도 拘束力이 없는 死文化된 조항이었던만큼 公正去來法의 시행에 즈음하여 이를 不公正去來行爲로 指摘 하였음도 十分 首肯이 되는 터이다.

그렇지만, 代理店契約이 公正去來法施行以前에, 이미 雙方間에 이루어진 法律行爲임을 參酌할때 이러한 是正措置가 무리없이 실현될수 있을 것인지에

關하여는 若干의 의문점이 없지 않다. 販賣區域이나 石油販賣業者의 價格은 政府가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지정 또는 告示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 實情이며 代理店契約을 이유로 이에 反하는 約定을 하여도 效力이 없으며, 精油會社의 一방적, 任意的 販賣方法決定이나 契約解釋乃至 契約解止權도 公正去來法乃至 民法에 의한 不公正한 法律行爲에 該當하게 되어 當然히 無效로 됨이 명백하다. 이런 뜻에서 代理店契約修正措置 是正命令은 그 實益面에서는 勿論이고, 既存契約의 尊重이나 法的安定性의 측면에서도 疑問視된다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精油會社와 石油代理店間 雙方契約의 修正은 精油會社 一방의 意思로서는 不足하고 相手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精油會社側에 대하여만 發하여진 是正命令의 實現可能性도 문제로 된다. 특히 排他條件附去來約定은 代理店契約中 緊要한 條項이어서 契約期間自體가 1年의 制約을 받게 되는데 代理店契約과 같은 繼續的長期供給契約의 기간이 契約當事者間의 합의가 배제된 채 1年範圍內로 特定된 이상 石油代理店側의 營業設備投資에 따른 危險負擔을 감안하여 契約修正措置是正命令은 마땅히 精油會社와 함께 石油代理店에 처하여도 發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 ×

公正去來法은 市場經濟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既存의 競爭阻害要因除去에 필요한 過渡期間을 設定하고 同法의 적용이 排除되는 特別法을 따로 법률로서 定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石油事業의 境遇에는 公正去來法上의 不公正去來行爲條項과 함께 石油事業法의 諸般規定이 從前과 같이 적용되게 된다.

石油의 生産·輸送·貯藏·販賣機能 그 모두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이 現行 石油流通構造또한 國內石油業界의 變遷過程에서 다져진 經驗과 實踐을 토대로 確立된 것이다. 公正去來法의 理念에 입각한 公正하고 자유로운 去來秩序도 既存秩序에 바탕을 두고 漸進的으로 이룩되어야 할 출안다. 長久한 時期에 걸친 꾸준하고도 繼續的인 努力만이 石油業界의 진정한 發展을 위하여 참으로 價値있는 것이며 市場規模의 成長에 발맞추어 石油製造·販賣業의 社會·經濟的인 作用과 役割이 함께 증대되기를 祈願한다.*